

국민연금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는 공무직(시설직, 보안직) 및 기간제근로자(시설직)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개요

☐ 채용분야: 공무직(시설직, 보안직) 및 기간제근로자(시설직)

- ※ 공무직: 시보기간 3개월 운영 후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공무직(무기계약직) 정규 임용
- ※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 2026.9.1.~2027.12.31.

☐ 채용인원 및 근무장소

구 분	계	서울남부지역본부		삼척지사
		시설직		보안직
		주임(나)_기계	<기간제> 대리(다)_기계	주임(가)
채용인원	4명	2명	1명	1명
임용예정일	-	2026. 9. 1.(화)		

- ※ 각 채용분야별 채용 공고건에 대하여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분야 전체 '불합격' 처리합니다.
- ※ 기간제근로자는 휴직자 대체를 위한 채용으로, 계약기간(2026.9.1.~2027.12.31.) 만료 후 고용 관계가 소멸되며, 휴직자 조기 복직 시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정규직 전환과는 무관)

☐ 수행업무

구분1	구분2	수 행 업 무
시설직	주임(나)_기계	• 사옥시설물의 점검, 운전 및 보수(응급조치 등), 시설물 관리 관련 업무 분장으로 부여받은 업무 수행 등 ※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음
	대리(다)_기계	
보안직	주임(가)	• 직원 및 외부인 차량통제 및 안내, 사옥출입통제 및 수시 순찰(출입문 시건 등) • 비상사태 시 응급대응, 계절별 시설 및 안전 관련 공동업무 지원, 업무분장으로 부여받은 업무수행 등

□ 지원자격 (접수 마감일 '26. 7. 29. 기준)

채용분야		지 원 자 격
공통		- 연령·성별·학력 등 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 이상자는 제외) * (정년) 보안직 만 65세, 시설직 만 60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참고 1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시설직	주임(나)_기계	관련분야 경력이 1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을 소지한 사람 ※ 관련분야: 에너지, 공조, 건축설비, 소방설비(기계), 가스, 승강기
	대리(다)_기계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이 1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소지한 사람 - 관련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 관련분야: 에너지, 공조, 건축설비, 소방설비(기계), 가스, 승강기
보안직	주임(가)	「경비업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참고 2 ※ 관련분야 유경험자 우대

- ※ 경력산정은 지원한 분야의 경력에 한하여 30일을 1개월로, 365일을 1년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며,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다수인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근무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인정
- ※ 지원서에 기재한 담당업무가 경력증명서로 확인 가능해야 하며, 경력증명서와 4대보험 증명서 상 회사명·근무기간이 동일한 경우만 인정(폐업 등 사유로 제출을 못하는 경우, 해당 경력 인정불가)
-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기재가 불가능한 기관의 경우, 담당업무 확인이 가능한 추가서류(소속, 담당업무, 근무기관명, 기관 직인 포함)를 함께 제출할 경우 인정

< 시설직 인정 자격증 >

분야		자격증명
기계	에너지	에너지관리기능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기능장
	공조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건축설비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설비기사
	소방설비(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가스	가스기능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가스기능장
	승강기	승강기기능사, 승강기산업기사, 승강기기사

※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고, 해당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

□ 우대사항 (접수 마감일 '26. 7. 29. 기준)

구 분	대 상 자	증빙서류	적용 단계	가점	적용 대상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분야별 채용인원이 4명 미만으로 동점자 발생 시 우대하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가점 부여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초 전형	5/10	공무직, 기간제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¹⁾)	초 전형	10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서류전형	5	공무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수급자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	서류전형	5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본인 명의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북한이탈 주민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3년 이상인 경우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기본증명서(상세)	서류전형	5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귀화한 본인·배우자·자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자녀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서류전형	5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 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사람(*91.9.2. 이후 출생)	보호종료확인서,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등	서류전형	5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사상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인 경우)	서류전형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상자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공무직 (시설직)	우리 공단에서 공무직(시설직)으로 연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근무성적평정표 상 '미흡' 평가를 받지 않은 사람 * 근무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은 제외하며, 단시간 근로의 근무기간 환산은 근무일수 기준으로 산정 * 시설직이 보안직에 지원한 경우만 적용	4대보험·직역연금 증명서 ²⁾ , 경력증명서	서류전형	5	

- 1) 국가유공장애의 경우,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로 '장애인 증명서' 대체 가능
2) 4대보험증명서로 가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경력자에 한해 추가 제출

※ 각 가점의 기간 산정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우대사항이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 임용일 및 계약기간

채용분야		임용일 및 계약기간
공무직	시설직(나)_기계	• 임 용 일: 2026. 9. 1. • 계약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음
	보안직(가)	
기간제근로자	시설직(다)_기계	• 계약기간 : 2026. 9. 1. ~ 2027. 12. 31.

☐ 근무처 및 근무시간

근무처	채용분야	근 무 시 간
서울남부 지역본부	시설직(나)_기계	• 감시·단속적 근로 형태로 운영 중인 기존 교대근무 방식 준용 ※ 교대근무는 3교대를 원칙으로 하되, 사육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시설직(다)_기계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
삼척지사	보안직(가)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

☐ 보수월액

시설직(나)_기계	시설직(다)_기계	보안직(가)
2,643,000원	3,060,000원	2,442,000원

- ※ 식비, 명절휴가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자격수당 등 추가 지급되는 수당은 없으며, 경영평가 성과급, 자녀수당, 복지포인트, 단체보험은 별도임
- ※ 시설직의 경우, 전기·기계 분야 안전관리자 선임 시 특수직무·역할급 별도 지급
- ※ **경력증명서**는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확인을 위하여 제출받으며, 연봉제를 적용함에 따라 **호봉산정과는 무관함**
- ※ 채용 이전 ① 군경력(근무기간의 100분의 100), ② 채용직무와 동일·유사한 기능직 공무원 경력(근무기간의 100분의 80)에 대해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연차를 가산함

☐ 정년: 보안직 만 65세, 시설직 만 60세

2. 전형절차 및 일정

구분	내용	일정
지원서 접수	- 채용사이트(https://nps.recruiter.co.kr) 통해서 접수 ※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 불가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 지원서 제출 불가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직무능력기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6.7.22.(수) ~7.29.(수) 18:00
서류전형	- 자격요건 충족여부, 경력, 자격사항,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사별·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직무능력기술서는 각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불성실 작성자(내용 없음, 질문과 무관한 내용, 특정기호만 표기, 동일 내용 반복 등)는 불합격 처리 ※ 합격선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선발하되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자를 우선 선발	'26.8.4.(화) <합격자 발표일> '26.8.6.(목) (개별 안내 예정)
인성검사 *기간제근로자 제외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전형 대상에서 제외 - 검사결과는 면접전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	'26.8.6.(목) ~8.10.(월) 18:00 (개별 안내 예정)
면접전형	- 시간·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경력·우대사항 등에 대한 증빙서류(원본) 제출 필수(증빙서류 미제출 시 면접전형에서 제외, 증빙서류와 지원서 내용이 달라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에서 제외) - 방법 : 조별 면접(1개조 5명 이내, 조별 30분 내외) 실시 ※ 공단 내·외부 사정에 따라 개별면접으로 변경될 수 있음	'26.8.13.(목) (개별 안내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합격자 중 지사별·채용분야별 최고득점자(가점포함)를 최종합격자로 선발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고득점자 순으로 지사별·채용분야별 각 2명의 예비합격자 선발 [채용 예정인원을 초과한 합격선 동점자 처리기준]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사람 ④ 면접전형에서 우선되는 평정요소의 점수가 높은 사람	'26.8.25.(화) (개별 안내 예정)
임용	- 임용 후 시보기간(3개월)을 거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정규 임용 ※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 2026.9.1.~2027.12.31.	'26.9.1.(화)

※ 공단 내·외부 사정에 따라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3. 증빙서류 제출

□ 제출대상: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전형 대상자)

□ 제출방법: 스캔본 이메일 제출 후 면접전형 시 원본 제출

※ 제출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예정이며, **미제출 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

구분	제출 서류 내역
공통 (대상자 전체)	① (경력사항 관련) 경력사항 기재자는 아래 2개 서류 모두 제출 1) 입사지원 시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 전체 2) 4대보험* 또는 직역연금 가입증명서** 1종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60세 미만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중 1종 ** 4대보험증명서로 가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경력자에 한해 추가 제출 • 지원서에 기재한 담당업무가 경력증명서로 확인 가능해야 하며, 경력증명서와 4대보험 증명서 상 회사명·근무기간이 동일한 경우만 인정 ※ 용역업체 근무 경력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회사명을 기재 ※ 사명 변경, 인수합병 등으로 불일치하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소명자료) 제출 필요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기재가 불가능한 기관의 경우, 담당업무 확인이 가능한 추가서류(소속, 담당업무, 근무기관, 기관 직인 등 포함)를 함께 제출할 경우 인정 • 폐업 등 사유로 경력증명서 제출을 못하는 경우, 해당 경력 인정 불가 (경력증명서는 발급기한에 제한이 없음, 과거 발급분도 인정) • 경력증명서 대체 가능 서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분야별 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 단, 경력증명서 상에 분야(기계, 소방, 가스, 전기 등)가 채용분야와 일치하는 경우만 인정
	② (우대사항 관련)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포함), 한부모가족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기본증명서(상세) 포함) ○ 다문화가족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립준비청년 증빙서류(보호종료확인서, 자립수당수급자 확인서 등) ○ 의사상자 증명서(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 우대사항 증빙서류는 접수 마감일('26.7.29.) 이후 발급한 원본 제출
시설직	①~② 공통 제출서류 전체(②는 해당자에 한함) ③ (자격사항 관련) 입사지원 시 기재한 각 분야 자격증* 사본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6.7.29.)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함

※ 입사지원서 제출 전 서류제출이 가능한지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 응시자격, 자격증 유효여부, 경력, 우대사항 등과 관련된 사항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지원서 접수 마감일('26.7.29.)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따라 서류전형 시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기재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는 면접 시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에서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 ☐ 직무능력기술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성명, 생년월일(연령), 성별, 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혼인여부 등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원서 기재 내용(연락처 포함)의 착오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추후 증빙서류와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각호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채용 결격사유로 판단하여 응시할 수 없으며 임용된 이후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응시자격 또는 임용에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일 부터 무단 결근한 경우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최종합격자는 3개월 기간의 시보로 임용되며,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임용됩니다.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임용포기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 시 우선 순위에 따라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간제근로자는 휴직자 대체를 위한 채용으로 계약기간(2026. 9. 1.~ 2027. 12. 31.)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휴직자 조기 복직 시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정규직 전환과는 무관)
-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또는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등의 부정행위,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사람 포함)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재직 중에는 4대보험 적용 여부 불문하고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임용일 전 4대보험 퇴사 완료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폐업등록 완료 필요)
- 최종 합격되지 않은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기간이 지나면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관련 비리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26. 8. 25.~ '26. 9. 9.)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이메일(npcjinsa1@nps.or.kr)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응시자, 시험출제자, 면접위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 불가

- ☐ 채용 일정은 공단 내·외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부 수행업무와 근로조건 등 기타 입사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채용담당자(02-3416-60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7. 22.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6의 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6의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경비업법」 제10조에 따른 결격 사유

1. 만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형법」 제114조의 죄
 -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